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213

발의연월일: 2023. 2. 23.

발 의 자:전재수·김영배·양기대

김경만 · 김태년 · 강득구

박재호 · 최인호 · 송기헌

이병훈 · 김상희 · 김정호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, 인사장, 벽보, 사진, 문서·도화,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·첩부·살포·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규제는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, 광고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,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 바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동 조항 중 '광고, 벽보, 문서·도화, 인쇄물 등의 배부·첩부·게시를 금지하는 부분'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(2018헌바357 등).

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, 인사장, 벽보, 사진, 문서·도화,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·첩부·살포·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,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 는 것임(안 제93조 등). 법률 제 호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의 제목 "(脫法方法에 의한 文書‧圖畵의 배부‧게시 등 금지)"를 "(문서‧도화의 배부‧게시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(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"을 "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"로, "것을"을 "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"로, "게시할 수 없다"를 "게시하려는 자는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누구든지"를 "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.

제255조제2항제5호 중 "第93條(脫法方法에 의한 文書‧圖畵의 배부‧ 게시 등 금지)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‧圖畵 등을 배부‧첩부‧ 살포‧게시‧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, 같은 條第2項의"를 "제93조(문서 ·도화의 배부‧게시 등)제2항의"로, "第3項의"를 "제4항의"로 한다. 제261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9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행 개 아 第93條(문서・도화의 배부・게시 第93條(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・ 圖畵의 배부・게시 등 금지) 등)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하기 위하여-----(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 거일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 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(創 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・ 정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 서 같다) 또는 候補者(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. 이 하 이 條에서 같다)를 支持・ -----것으로서 중 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 는 것을---------게시하려는 자는 관할선거 는 廣告, 人事狀, 壁報, 사진,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文書・圖畵, 印刷物이나 錄音・ 錄畵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 한다. -----한 것을 배부·첩부·살포·상 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

하다.

- 1. 2. (생략)
- ② ト구든지 選舉日前 90日부 터 選舉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 補者의 名義를 나타내는 著述 ・演藝・演劇・映畵・사진 ユ 밖의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 으며, 候補者는 放送・新聞・雜 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다. 다만,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문 또는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 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<신 설>

1. • 2. (연행과 실금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
<u> </u>
<u>&lt;단서 삭</u>
제>

이 /위케키 키어)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전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

③ (생략)

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 ① (생 ) 第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
- 1. ~ 4. (생략)
- 5. 第93條(脫法方法에 의한 文 書・圖畵의 배부・게시 등 금지)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 여 文書・圖畵 등을 배부・ 첩부・살포・게시・상영하거 나 하게 한 者, 같은 條第2項 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 또 는 出演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 **반하여** 身分證明書・文書 기 타 印刷物을 發給・배부 또 는 徵求하거나 하게 한 者
- 6. ~ 8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・징수 등)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・징수 등)

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
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
하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제93조(문서·도화의 배부·</u>
게시 등)제2항의
<u>제4항의</u>
6 ~ 8 (현행과 간음)
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- ① ~ ⑤ (생 략)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4. (생 략) <신 설>

⑦ ~ ⑫ (생 략)

-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-----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9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자
- ⑦ ~ ⑫ (현행과 같음)